

정책네트워크 **내일**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문 의: 『정책네트워크 내일』

02-704-0518 / www.policynetwork.or.kr

『차명거래 방지·자금세탁 근절,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안철수 의원실이 공동으로 '차명거래 방지 및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하 관련 내용을 토대로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주제: 【차명거래 방지·자금세탁 근절, 어떻게 이룰 것인가?】
- 일시: 2013년 8월 20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 주최: 정책네트워크 내일/국회의원 안철수
- 발표 및 토론
 - 사회: 전성인(홍익대학교 교수)
 - 발표: 『차명거래 방지 및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고동원(성균관대학교 교수)

- 토론: 김자봉(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효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유윤상(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
이명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정순섭(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요지:

1-1. 차명거래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 차명거래가 탈세, 자금세탁 행위 등 불법거래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
 - ▲ 최근 역외 탈세 행위와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 문제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어김없이 차명거래가 이용되고 있음.
 - ▲ 횡령죄, 알선수재죄 등의 범죄에서 발생한 재산, 즉 불법 재산의 은닉 행위와 주가 조작 행위 등 범죄 행위에도 차명거래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차명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 증가
- 현행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 규제의 문제점으로는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 의무가 차명 거래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차명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명의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 법상 차명거래 금지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임.
- 또 ▲금융실명법 제3조 위반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사실상 제재 조치가 유명무실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등 다른 행정적 제재 조치도 없으며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도 없는 점 ▲차명 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고, 차명 거래 당사자인 명의자와 출연자

에 대한 형벌 부과도 없으며 ▲다른 행정적 제재 조치인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도 없는 점 등도 문제

1-2. 차명거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차명거래 방지 방안>으로는 첫째, 차명 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선의 차명 거래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이 있음.(배우자 간의 금융거래, 일정한 금액(3천만 원) 이하의 직계존비속 명의 금융거래, 종중이나 종교단체 재산의 타인 명의 금융거래, 법인 아닌 단체의 타인 명의 금융거래, 법령상 허용되는 차명거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차명 거래 등)

둘째, 차명 거래 당사자인 명의자와 출연자에 대해 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셋째, 명의자와 출연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연자 명의로 실명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 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년 후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

넷째, 특정 범죄(횡령죄, 알선수재죄, 조세포탈죄 등) 목적으로 차명 거래 이용시 당사자에 대한 형벌 조항 신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섯째, 차명 거래 당사자와 통모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한 형벌 조항 신설(2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대한 도입이 필요

2-1. 자금세탁 행위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규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처벌은 ▲자금 세탁 행위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범죄수익 등의 수수(收受)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통해 집행되고 있음.

- 현행 자금세탁 행위 규제의 문제점은 첫째, 조세(지방세포함)포탈죄 및 관세포탈죄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처벌규정 미비하다는 점임.

(현행은 ▲조세포탈죄의 가중처벌(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죄(이중에서도 조세환급을 받은 경우만 해당)와 관련된 자금세탁 행위만 형사처벌 대상) ▲지방세포탈죄의 경우도 가중처벌 되는 경우(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관세포탈죄의 경우도 가중처벌 되는 경우(포탈금액이 5천만 원 이상)만 해당)

둘째, 불법재산 등을 운반·보관·전달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함.(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범죄수익 등을 운반·보관·전달한 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 없음)

셋째, 금융거래의 '실제소유자' 확인 규정의 불명확하다는 점 등임.

2-2.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개정하는 등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 구체적인 <자금세탁 근절 강화 방안>으로는 첫째, 조세(지방세)포탈죄 및 관세포탈죄와 관련된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

둘째, 불법재산 등을 운반·전달·보관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필요

셋째,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시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강화할 필요

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은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 개인 고객은 직업, 법인 고객은 사업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자금의 원천도 확인하도록 함. ▲또한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 법인 고객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예를 들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2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나 당해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 대한 확인 의무도 부여함.

★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따뜻한 변화!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www.policynetwork.or.kr)에서 ‘후원하기’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

(우) 121-71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707호

<http://www.policynetwork.or.kr> · 02-704-0518